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절차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의령군

내 용

의령군은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령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2016. 3. 30.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016회계년도 2차 추경부터(2016. 10. 24 고시일) 40억 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특별회계 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의령군 ○○○○과에서는 2015. 11. 23.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16. 3. 30. 공포하였다.

그런데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세입확충을 위한 조례로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아닌 만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존속기한이 누락되어 있다.¹²⁾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령군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령군 ○○○○과에서는 2015. 11. 23. 하천골재 매각대금, 기타수입, 일반회계 진출·입 등을 규정한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계획”에 따르면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세입확충을 위한 조례로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아니어서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이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의령군 ○○○○과에서는 2015. 11. 25.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2) 존속기한(2021. 12. 31.) 등을 명시한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 계획”(2016. 11. 2.)을 수립하여 2016. 12월 중 공포를 목표로 해당 조례안 개정 추진 중

거치지 않고 해당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는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